

프랑스의 조정제도와 시사점

- 민간형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박 현 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he French Conciliation and Mediation System

Hyun-Jung Park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 프랑스는 사법형 및 행정형 조정이 주가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80년대부터 민간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수의 자연인과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이 2008년 및 2013년 민사 및 상사 분야, 그리고 소비자분쟁 분야에서의 조정활성화를 위해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프랑스의 조정제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민간형 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조정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프랑스에서 사법조정(la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한 사법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을 말하며, 민간조정(la médiation)은 민간조정인(le médiateur)이 주재하는 조정을 말한다. 사법조정인 경우 민간조정과 달리 사법조정인이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대신 분쟁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사법조정은 법원이 직접 진행하는 조정과, 법원이 사법조정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조정, 그리고 당사자가 법원의 개입 없이 상호간의 합의로 사법조정인을 선택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조정이 있다. 민간조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인의 선정 및 절차 진행이 결정되는 조정과 법원이 소송사건이나 조정신청 사건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한 민간조정인에게 의뢰하여 진행되는 조정이 있다.

프랑스는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정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조정인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단체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민간조정이 자생적으로 나타났고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현재도 조정인 자격 인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민간조정인이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법률자문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활동을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법률자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제109조가 민간조정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조정법에 민간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조정인 개념과 조정인의 권한이나 업무범위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정인의 양성에 관한 기본 틀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차원의 인증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 Unlike Korea, wher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mediations are the main stream,

France has private mediation already been in place since the 1980s. France's mediation system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especially as the European Union directives in 2008 and 2013 to promote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sectors and in consumer disputes are transposed into national law.

In France, conciliation and mediation differ in three ways. Conciliation is made by a judge or a court-appointed judicial conciliator, whereas mediation is presided over by a mediator, a private person or body appointed by the parties in dispute. Conciliators can propose a solution to the party, whereas mediators are not supposed to do so. Mediators can receive remuneration the parties have agreed upon; remuneration is expressly prohibited to the conciliators.

It is a mission of judges to conciliate but this mission can be delegated to judicial conciliators. The parties can also commission a judicial conciliator by mutual agreement without any court intervention, in which case the boundary between conciliation and mediation becomes unclear. Mediation usually begins wh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agree to settle their disagreements by mediation and choose a particular mediator or mediators. Judicial mediation also can be possible when judges request a mediator or mediators for mediation, but this requires the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process of transposing the 2008 directive into domestic law, France decided not to introduce a government controlled certification system. The training and supervision of mediators are left to self-regulation of the mediators. This was possible in France because private mediation had already emerged since the 1980s and many organizations of mediators were in active operation.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argue for the need to certify the qualifications of mediators, but no significant change has been made in th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article 109 of the Korean Attorney-at-law Act, which bans anyone not qualified as a lawyer to give legal counsel for a charge, has been a stumbling block to the vitalization of private mediation, as the mediator's activities are understood in Korea as a kind of legal counsel. France also has a similar prohibition, but mediation is not, in itself, considered a legal counsel. Mediators are advised not to give a legal advice to a party. They do not draw up agreements themselves and they do not sign in the agreement.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lay a legal basis for private mediation. New provisions defining private mediation and missions of the mediators in the Judicial Mediation Act or a separate act for ADR including private mediation may be an idea. Basic framework for training mediators also needs to be set by statute, which does not necessarily mean a government controlled certification.

- 논문접수 : 2020. 7. 6.
- 심사 : 2020. 7. 24.
- 게재확정 : 2020. 8. 10.

I. 서론

ADR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조정은 이름 자체는 친숙하지만, 그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나라별로 조정(mediation)이라는 이름에 부여한 의미나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양상

이 서로 다른 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정 개념을 조금 넓게 이해하여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지원하는 절차로 보되, 합의를 제안하여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까지도 포

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형 조정은 오래전부터 수 소법원에 의한 조정이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 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 고, 행정형 조정도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60여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성행 중이 다.¹⁾ 반면에 민간형 조정의 경우 대안상사중재 원²⁾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를 이 용한 조정 이외에는 민간형 조정으로 볼 수 있 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³⁾ 우리나라에서 민간 형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서는 주로 두 가지가 지적된다. 먼저 법제도의 측면에서, 변호 사가 아닌 자가 유료로 법률사건의 중재·화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는 법적 근거 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시도하는 민간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⁴⁾ 민간조정을 법의 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도 민간조정외의 한계로 지적된다.⁵⁾ 다 른 한편으로, 범외적인 측면에서 조정인의 양성 이 부족하여 민간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 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⁶⁾⁷⁾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80년대부터 민간조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다수의 자연인과 법인이 민간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 럽연합이 2008년 및 2013년 민사 및 상사, 그리 고 소비자분쟁 분야에서 조정활성화를 위해 지 침⁸⁾을 제정함에 따라 프랑스의 조정제도도 상 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⁹⁾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조정제도를 민간형 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조정제도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 하였다. 프랑스의 조정제도는 민간조정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민사소송법전(Code de procédure civile)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사법형 조정제도도 같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조정인단체를 통한 조정인 양성과 감독 현황을 살펴보고 조정인 윤리 규약의 내용을 소개하였 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 는 바를 법제도의 정비와 조정인 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노동이나 소비자분 쟁 또는 가사분쟁 등 몇몇 분야는 이전부터 민 간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상당 한 제도 변화도 있었으나 지면과 역량의 부족으 로 이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행정분쟁에 대한 조정제도도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1) 일부는 조정(調停)이라기보다 제정(裁定)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측되나 일일이 확인해보지는 못하였 다. 행정형 조정의 현황은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5면 참조.
2) 대안상사중재원은 상사중재 외에도 2010. 5. 3.부터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사건, 2012. 7. 1.부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대안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ab.or.kr/html/kcab_kor/revision/revision01.jsp, 2020. 8. 16. 최종방문)
3) 김용섭, “민간조정 활성화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7호, 2016, 218면 참조.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사인 간에 조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는 박노형, “조정 활성화 위한 제언”, 2020. 3. 26. 자 법률신문 참조.
4) 김용섭, “조정 활성화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협의회(편), 외국의 조정제도, 2017, 3면 ; 박노형, 앞의 기사 참조.
5) 박노형, 앞의 기사 참조(조정기본법 제정을 주장).
6) 김용섭, “조정 활성화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3면 참조.
7) 물론 이 문제는 조정인 인증 등 조정인 양성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로 연결된다.
8) Directive 2008/52/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mai 2008 sur certains aspects de la médiation en matière civile et commerciale, Directive 2013/11/U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1 mai 2013 relative au règlement extrajudiciaire des litiges de consommation et modifiant le règlement (CE) n° 2006/2004 et la directive 2009/22/CE.
9) 제도개혁 전의 조정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이경민, “프랑스의 조정제도”, 재판자료 66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2], 1994, 459~517면 참조.

나 이 부분 또한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II. 프랑스의 조정제도 개관

1. ‘médiation’과 ‘conciliation’

프랑스에서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MARC, les modes alternatifs de règlement des conflits)’ 또는 ‘화해적 갈등 해소 절차(MARD, les modes amiables de résolution des différends)’¹⁰⁾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médiation’과 ‘conciliation’ 양자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번역상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 다. 프랑스법에서 양자는 모두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이 분쟁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돕 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먼저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 하고 감독하는 제3자(자연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conciliation은 판사(le juge)의 임무이며 이 임무가 제3자에게 위임된 것이다. 반면에, médiation은 당사자가 합의로 선임하는 제3자가 절차를 진행한다. 보수의 측면에서도 전자의 경 우 절차 주재자는 국가로부터 실비를 보전받는 외에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후자의 경우 절차 주재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경우

절차 주재자가 분쟁 해결책을 당사자에게 제안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해결책의 제시는 그 임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이러 한 차이를 고려하면 ‘médiation’을 중개(仲介) 또 는 알선(斡旋)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¹²⁾

그러나 실무에서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 절차 주재자의 해결책 제안 허용 여부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평가 도 있다.¹³⁾ 특히 conciliation도 médiation과 마 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상호간 의 합의로 이용할 수 있는데(la conciliation conventionnelle), 이 경우 양 제도의 유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¹⁴⁾ 민사소송법전은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의 경우 양자를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다(법 제1530조).¹⁵⁾ 프랑스에서 양자 의 구별이 계속되는 실천적 이유는 conciliation 이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 있다. 따 라서 소규모 분쟁의 경우 당사자에게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고 절차 주재자가 합의조서(le constat d'accord)의 작성을 도울 수 있는 conciliation을 무료로 이용하고, 유능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médiation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⁶⁾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양자에 본질적 인 차이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양자 모두 우

10) 최근에는 MARC라는 용어보다 MARD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MARD는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서만이 아니라 그 절차 자체의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용어라고 한다. Serge Guinchard et al.,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la version numérique., Dalloz, 2016. n° 326.21.
11) Conseil d'État, «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 Dossier de presse, 29 novembre 2010.
12) ‘médiation’을 중개, ‘conciliation’을 조정으로 번역한 예로 이로리, “프랑스의 ADR제도 - 법원관련 중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2009, 469~470면.
13) Serge Guinchard et al., *Institution Judiciaires*, 13^e éd., Dalloz, 2015, n° 44 ;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5.12에서 재인용.
14)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5.12.
15) 이하 민사소송법전은 괄호 안에서 ‘법’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16) Natalie Fricero et al., *Le guide des modes amiables de résolution des différends(MARD)*, 3^e éd., Dalloz, 2017, p. 140.

리 법제에서는 조정으로 이해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특히 우리가 민간조정 활성화를 말할 때 생각하는 조정의 모습이 ‘mediation’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양자를 구별하여 ‘conciliation’은 ‘사법조정’으로, ‘mediation’은 ‘민간조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2. 사법조정

사법조정(la conciliation)은 법원 또는 법원이 임명한 사법조정인(le conciliateur de justice)이 하는 조정을 말한다. 사법조정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조정, 법원이 사법조정인에게 위임하여 하는 조정,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법절차와 무관하게 사법조정인에게 의뢰하여 행하는 조정으로 나뉜다. 민사소송법전은 사법조에 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분야별로 다양한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법원에 의한 사법조정

(1) 연혁

프랑스에서 법원에 의한 조정의 초기 형태는 이미 1807년 민사소송법전에 들어가 있었으나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1949년 폐지되었다.¹⁷⁾ 이후 조정은 몇몇 분야에서만 시행되다가 1975년 개정으로 다시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제도로 편입되게 되었다.¹⁸⁾ 당시 입법자는 조정이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의 비호 아래 서로의 관

점을 절충하고, 각자의 필요와 이익에 맞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책임감을 고취하는 한편, 법원은 합의가 합법적이고 공공질서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당사자 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박애(la fraternité)의 취지를 살려 시민 사이의 분쟁을 종결짓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수단이라 생각했다.¹⁹⁾

프랑스에서 조정은 법원의 임무 중의 하나다(법 제21조).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적당한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법 제129조 제2항), 특히 제1심 민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27조 제1항).

(2) 제소전 조정과 소송계속 중의 조정

제1심의 일반 법원인 지방법원(le tribunal judiciaire)²⁰⁾ 관할 사건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조정절차가 이루어진다. 우선 당사자는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820조). 이를 “제소전의 조정 시도(la tentative préalable de conciliation)”라고 한다. 조정당사자가 사법조정을 신청하면 아래에서 보는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을 위임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접 조정을 할 수도 있다(법 제821조 제1항, 제825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신청인은 다시 소를 제기하여 다룰 수 있다(법 제826조). 법원은 소송계속 중에도 사법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법 제827

조), 조정이 실패한 경우 다시 소송절차로 돌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법원은 즉시 판결에 나아갈 수 있으나, 즉시 판결할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론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법 제830조).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이 당사자와 판사가 서명한 조서에 기재된다(법 제130조). 법원은 당사자에게 조서의 발췌본(이하 ‘조정조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문(titre exécutoire)이 된다(법 제131조 제1항).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²¹⁾

(3) 법원에 의한 사법조정과 판사의 역할

사법조정절차에서 판사는 “법을 말하는(dire le droit)” 재판관이 아니라 조정인으로서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또한 사법작용(un acte judiciaire)이므로 당사자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²²⁾ 또한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될 수 없다.²³⁾ 특히 당사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당해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지가 없었다면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그 조정조서는 무효가 된다.²⁴⁾ 그러나 조정절차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절차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

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심구조 등 일부 원칙은 완화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당사자 일방을 심문할 수 있다.²⁵⁾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에서의 판사의 역할이 이처럼 다르므로, 조정절차에서 판사가 알게 된 사실이 소송에서 중립적인 판단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한 판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판사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거나 당사자의 제척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민사소송법전 제830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담당판사 교체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제척신청을 포기하면 조정에 참여한 판사가 판결 선고에 관여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으며, 실무에서는 미리 당사자의 의향을 확인하고 재판 관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²⁷⁾

21) Cass. Civ. 2nd 26 janvier 2017, n° 15-29.095.

22)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8.

23)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8.

24)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34.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는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최종심 법원이다)의 판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대표적인 판례로 Cass. Soc., 24 mai 2006, n° 04-45 877).

25) Serge Guinchard et al., préc., n° 325.162;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6. 노동사건 조정의 경우 노동법전(Code de travail) L.1454-1조 제2항에서 위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6)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36~37. 법원조직법전 L.111-6조는 판사가 이전에 판사 또는 중재인으로서 사건을 알았거나 당사자 일방을 자문한 경우를 제척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27)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37. 이에 관한 판례로 Cass. Civ. 2^e, 20 octobre 2005, n° 04-04.114.

17)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26~27. 프랑스 사법조정의 연혁에 대한 설명으로 원용수,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 현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2007, 101~104면 참조.

18) 구 민사소송법전 제127조~제131조(소송계속 중의 법원조정에 관한 규정).

19)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6.

20) 두 가지 유형의 제1심 법원(les tribunaux de grande instance et les tribunaux de l'instance)이 2020. 1. 1.부터 단일한 지방법원(les tribunaux judiciaire)으로 통합되었다(la loi n° 2019-222 du 23 mars 2019 de programmation 2018-2022 et de réforme pour la justice).

나. 사법조정인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법조정

(1) 사법조정인의 임명과 지위

사법조정인 제도는 1975년 민사소송법전 개정 및 1978. 3. 20.자 명령(décret)²⁸⁾으로 사법조정인의 자격과 임명,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 사법조정인은 법원의 임명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여 민사소송법전에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위 명령 제1조 제1항). 사법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분야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위 명령 제2조 제2항). 원래 사법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었는데, 1996. 7. 22. 명령 개정으로 위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9. 8. 30. 개정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사법조정인은 항소법원 내 지방법원별로 관할구역을 정하여 임명된다.³⁰⁾ 항소법원장은 사법조정인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법관(le magistrat)³¹⁾의

추천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거쳐 사법조정인을 임명한다. 사법조정인의 임기는 최초 임명시 1년이고 그 뒤로는 2년 단위로 갱신된다(위 명령 제3조).

사법조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이다(위 명령 제1조 제2항). 즉,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는 무상으로 진행되며,³²⁾ 사법조정인은 아래에서 보는 비용상환 이외에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이 사법조정인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으나,³³⁾ 사법조정 서비스를 시민들이 민중적이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를 일반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도 있다.³⁴⁾ 사법조정인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출장비용을 상환받고,³⁵⁾ 분기별로 비서 고용, 전화, 우편, 자료처리 등 그 밖의 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위 명령 제1조 제3항).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비용을 상환받을 수도 있으나, 그 총액은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1년을 기준으로 928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³⁶⁾

28) Décret n° 78-381 du 20 mars 1978 relatif aux conciliateurs de justice.

29) 여기서 명령(décret)은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30) 2020년 8월 현재 프랑스에는 항소법원이 36개 있다.

31) 프랑스의 일반사법제도(l'ordre judiciaire)에서 'magistrat'는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받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법원에 소속되거나(les magistrats du siège) 검찰에 소속된다(les magistrats du parquet). 'magistrat'는 법원에서는 재판을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법의 적용을 담당한다. 즉, 프랑스에서 'magistrat'는 판사와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juge'는 재판하는 관직이라는 의미에서 판사(判事)로, 'magistrat'는 법을 다루는 관직이라는 의미에서 법관(法官)으로 번역하였다.

프랑스에서 법관(le magistrat)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

<https://www.vie-publique.fr/fiches/38125-categories-de-magistrats-siege-et-parquet-independance-hierarchie>
[https://www.vie-publique.fr/fiches/38121-definition-et-statut-des-magistrats\(2020. 8. 16. 최종방문\).](https://www.vie-publique.fr/fiches/38121-definition-et-statut-des-magistrats(2020. 8. 16. 최종방문).)

32) [https://www.justice.fr/fiche/conciliateur-justice\(2020. 8. 16. 최종방문\).](https://www.justice.fr/fiche/conciliateur-justice(2020. 8. 16. 최종방문).)

33) Christophe M. Courtau, « Conciliateur de justice : promouvoir le conciliateur et la conciliation, piliers d'une justice de proximité citoyenne », art. site internet village-justice.com, parution mars 2014.

[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Conciliateur-justice-Promouvoir,16527.html\(2020. 8. 16. 최종방문\)](https://www.village-justice.com/articles/Conciliateur-justice-Promouvoir,16527.html(2020. 8. 16. 최종방문))

34)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69~70.

35) 국가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출장비용을 상환받는다(Arrêté du 21 décembre 2016 relatif aux conditions et modalités de remboursement des frais de déplacement des conciliateurs, art. 1^{er}).

36)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70.

사법조정인은 공직을 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자격으로도 사법활동이나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위 명령 제2조 제3항). 이는 사법조정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나 집행관 등은 사법조정인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사법조정인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재판에 관한 직무를 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무상 주로 법관, 변호사, 공증인, 교원,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사법조정인이 된다고 한다. 2019년 현재 프랑스 전국에서 2,340명이 사법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다.³⁷⁾ 2018년을 기준으로 사법조정인이 담당하는 조정사건은 155,257건이며, 그중 78,962건에서 조정이 성공하여 조정에 이르는 비율이 50.9%에 달한다.³⁸⁾

(2) 사법조정인이 조정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건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소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소송계속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법원은 직접 조정에 나서거나 사법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21조 이하 및 제827조 이하). 당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60-2조). 농업용 부동산 임대차 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인 '농촌임대차 법

원'(le tribunal paritaire des baux ruraux)이 본문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 법원은 사법조정인을 지명하여 조정 임무를 위임할 수 있다(법 제887조). 사법조정인에게 조정 임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명문으로 제소전 또는 판결에 앞선 조정절차가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법 제129-2조).³⁹⁾

한편, 프랑스에서는 제소전 조정 시도 절차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경부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민사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하여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강수를 두고 있다.⁴⁰⁾ 위 규정은 2019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0유로 이하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 토지경계확정 사건, 공사도급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소제기에 앞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사법조정인에 의한 조정이나 민간조정, 또는 참여절차(une procédure participative)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절차의 이행이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법 제750-1조).⁴¹⁾

(3) 절차의 진행과 종결

법원은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임한다. 사법조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 임무는 동일한 기간을 정하여 1회 갱신될 수 있다(법 제129-2조).

37) Ministère de la justice, «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2019 », p. 35. 사법조정인 홈페이지에는 2251명이 사법조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https://www.conciliateurs.fr/>, 2020. 8. 16. 최종방문)

38) Ministère de la justice, préc., p. 35.

39)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87.

40) Loi n° 2016-1547 du 18 novembre 2016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여기서 말하는 사법조정에는 아래에서 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도 포함된다.

41) 다만 민사소송법전 제750-1조에서 사안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위임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절차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⁴²⁾ 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나 조정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적절한 조정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법 제 129-6조).

사법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심문(‘audition’)을 진행할 수 있다(법 제129-3조, 제129-4조 제1항). 사법조정인에게 재판을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에 따라, 사법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행한 확인이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제출되거나 인용될 수 없다(법 제129-4조 제2항).

사법조정인은 조정이 이루어지면 합의조서(un constat d'accord)를 작성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합의조서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조 제2항). 승인이 있으면 합의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된다.⁴³⁾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화해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합의조서에 집행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

(1) 연혁과 의의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la conciliation

conventionnelle)’은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대신 상호간의 합의로 조정절차를 시작하지만, 사법부가 임명하고 관리하는 사법조정인이 조정인으로서 절차를 주재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은 ‘사법 외부의 사법조정(la conciliation extra-judiciaire)’이라고도 불린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들이 지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법 제 1530조)라는 점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민간조정과 같지만, 무보수의 사법조정인이 조정절차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은 사법조정인 제도 초기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으로, 사법조정인이 수행하는 임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⁴⁴⁾

(2)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의 대상

민사소송법전은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법 제1529조). 그러나 사법조정인은 당사자가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만을 맡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의 신분에 관한 분쟁, 자녀의 양육권 등 가족법상의 권리에 관한 분쟁, 행정기관과의 분쟁 등은 사법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⁴⁵⁾ 주로 개인이나 상인간의 부동산 경계에 관한 분쟁, 금전지급 관계, 소비자분쟁이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⁴⁶⁾ 한편, 공공질서에 반하는 합의는 민

42)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87.
 43) 민사집행법전(Code de procédure civile d'exécution) 제111-3조는 합의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경우 그 합의를 집행권원으로 인정한다. 법원의 승인은 이러한 집행력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합의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90.
 44)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06.
 45) https://www.justice.fr/fiche/conciliateur-justice(2020. 8. 16. 최종방문).

법전 제6조47)에 반하여 당연효이므로,⁴⁸⁾ 사법조정인은 그러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사법조정인은 원칙적으로 임명 시에 정해진 관할구역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분쟁의 대상이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있다.⁴⁹⁾

(3) 조정절차와 합의조서의 효력

사법조정인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법 제1536조),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조정인 홈페이지는 당사자가 손쉽게 사법조정인을 선택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사법조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한 조정신청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⁵⁰⁾ 사법조정인은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현장검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승낙을 받아 심문을 할 수 있다(법 제1538조). 그밖의 조정방식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전에 상세한 규정이 없다. 다만, 법원의 위임에 의한 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실성과 공정성, 비밀유지의무가 강조된다. 특히 비밀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전은 민간조정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1995. 2. 8.자 법률 제21-3조를 인용하고 있는데(법 제1531조), 일부 예외사유를 명시하는 외에는 법원의 위임에 의한 조정에서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같다.⁵¹⁾

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면 합의조서(un constat d'accord)를 작성하여 당사자와 사법조정인이 서명한다(법 제1540조).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합의조서에 집행력이 부여되며, 당사자 쌍방이, 또는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541조).

3. 민간조정(la médiation)

민간조정(la médiation)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둘 이상의 당사자가 화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하여, 당사자가 선정하거나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⁵²⁾⁵³⁾ 그중 당사자가 선정한 조정인에 의한 민간조정을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la médiation conventionnelle)이라고 한다.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으나,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이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된 2011년에 비로소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수소법원이 지명한 조정인에 의한 민간조정은 ‘법원연계 민

46)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10.
 47)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민법 103조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8) Natalie Fricero et al.,préc. pp. 110~111.
 49) Natalie Fricero et al.,préc. p. 111.
 50) https://online.conciliateurs.fr/?depuis=nat(2020. 8. 16. 최종방문)
 51) 공공질서상의 급박한 이유가 있거나, 아동의 우선하는 이익 보호 또는 사람의 신체나 정신의 안전 보호에 관계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밝히거나 그 내용을 누설하는 것이 그 합의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52) 재판기관의 조직과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관한 1995. 2. 8.자 법률(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제21조.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사법조정의 개념을 정의한 민사소송법전 제1530조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53) 조정인단체들의 민간조정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르다. ANM 등 7개 단체가 2009년 작성한 ‘조정인 윤리 규약 전문’(Code de déontologie du médiateur)에 따르면 민간조정이란 “당사자가 자신들의 책임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결정권이나 자문권이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비공개의 회담을 통해 관계의 수립 또는 회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추구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

간조정(la médiation judiciaire)이라고 하며, 재판기관의 조직과 민사, 형사, 행정소송에 관한 1995. 2. 8.자 법률이 제정된 1995년부터 법적 근거를 두게 되었다.

가.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

(1) 의의

국사원(Conseil d'État)⁵⁴⁾은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간행하면서 합의에 의한 조정을 “조정 가난한 부모(le parent pauvre de la médiation)”라고 칭하였다. 합의에 의한 조정이 조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국민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⁵⁵⁾ 프랑스는 유럽연합 지침의 영향으로 그동안 법원의 의뢰에 따른 조정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던 1995. 2. 8.자 법률에 합의에 의한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⁵⁶⁾ 민사소송법전 제1528조 이하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⁵⁷⁾

(2) 대상이 되는 분야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도 민사, 상사, 사회, 노동사건 등 법원이 관할하는 사법상의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전 제1529조 제1, 2항). 또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도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며(1995. 2. 8.자 법률 제21-4조), 공공질서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⁵⁸⁾

(3) 조정절차와 조정인 자격

조정 에 의한 분쟁해결이 시도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분쟁이 발생할 때 민간조정 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민간조정을 거치지 않은 소제기는 부적법하다.⁵⁹⁾ 그러나 가처분신청까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⁶⁰⁾ 다른 하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의 합의로 조정인을 지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합의에는 조정장소, 예상기간,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기한, 절차 진행방식, 조정인에 대한 보수지급과 당사자 사이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⁶¹⁾

사법조정인과 달리 민간조정인은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법인을 조정인으로

선택한 경우 조정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조정임무를 수행할 자연인을 지정한다(법 제1532조). 민사소송법전은 3급의 형사처벌이나 능력 또는 자격박탈의 전과기록⁶²⁾이 있는 사람은 조정인 또는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외에는 조정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재의 활동이나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분쟁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나 경험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민사소송법전 제1533조).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에도 합의에 의한 사법조정과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된다(법 제1531조, 1995. 2. 8.자 법률 제21-3조).

민사소송법전이나 1995. 2. 8.자 법률은 조정절차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1995. 2. 8.자 법률에서 민간조정인이 공정하고, 능숙하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21-2조). 민간조정은 계약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방식 등에 관한 틀을 미리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둘 수는 없으나, 계약의 일반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의 무기대응원칙과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이 조정절차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정인은 당사자에게 분쟁의 쟁점이나 협상절차 등을 공평하고 실효성 있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상호간에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정

을 중단하여야 한다.⁶³⁾

(4) 조정의 성립과 승인

당사자가 조정절차에서 합의(l'accord)에 이르게 되더라도 민간조정인에게 사법조정인과 같이 합의조서를 작성할 권한은 없다.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는 계약 법리에 따라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으며, 그러한 내용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민법전 제1128조 3°, 제1162조). 그러나 변호사나 법률가가 조정인이 되는 경우 합의문 작성을 돕기도 하고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조언하기도 한다.⁶⁴⁾

사법조정과 달리 민간조정에 대하여는 조정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법규정이 없다. 다만, 변호사가 당사자의 법률자문으로 참여하고 합의문 작성에 개입한 경우 변호사로서 부서를 하게 된다. 변호사의 부서가 있으면 합의문에 적힌 글씨나 서명이 당사자의 것임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으며(민법전 1374조), 당사자에게 합의의 내용을 이해시켰음을 확인한 것이 되므로, 이후에 당사자가 불복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65/66)}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는 당사자 쌍방이, 또는 일방이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한 소송관할이 있는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집행력이 인정된다(법 제1534조). 법원은 승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뿐 합의의 내용을 변경할

54) 프랑스는 재판권이 일반법원(la juridiction judiciaire)과 행정법원(la juridiction administrative)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과거원과 국사원이 각각 최고법원으로서 일반사건과 행정사건의 최종심을 맡는다. 국사원은 재판기관인 동시에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국사원은 법령을 심사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국사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전훈, “프랑스 콩세이테마(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중앙법학』 제12집 제3호, 2010, 423~443면 참조.

55) Conseil d'État, «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 préc., p. 10.
56) 2011. 11. 16.자 포괄수권명령(Ordonnance n° 2011-1540 du 16 novembre 2011) 제1조.
통상적으로는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정부가 의회의 허가를 받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되는 법규명령을 포괄수권명령이라고 한다(헌법 제38조). 포괄수권명령에 대한 설명은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2^e éd., LGDJ, 2018, pp. 296~297.

57) Décret n° 2012-66 du 20 janvier 2012 relatif à la résolution amiable des différends.
58)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02.
59) Cass. Civ. 1^{er}, 8 avril 2009, n° 08-10.866.
60) Cass. Com. 9 avril 2013, n° 12-14.659.
61)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12.

62) 3급 전과기록(le bulletin n° 3 du casier judiciaire)은 개인의 전과 중 중한 범죄 기록만 기재한 것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1급 전과기록은 개인의 전체 형사처벌 전력을 기록한 것으로 법원과 행정기관 접근할 수 있고, 2급 전과기록은 1급 기록에서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법에 정한 기관이 법에 정한 목적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프랑스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justice.fr/themes/casier-judiciaire>, 2020. 8. 16. 최종방문).

63)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220~221.
64)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22.
65)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22.
66) 2015년부터는 변호사회에서 변호사가 부서한 온라인 문서를 보존·관리하는 전자문서보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https://www.cnb.avocat.fr/fr/acte-electronique-comment-ca-marche>, 2020. 8. 16. 최종방문).

수 없다(법 제1565조).

나. 법원연계 민간조정

(1) 의의

‘법원연계 민간조정’(la médiation judiciaire)이란 “당사자가 화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하여,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제3자인 민간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도록 구성된 절차”를 말한다(1995. 2. 8.자 법률 제21조). 민간조정인은 당사자의 말을 듣고 각자의 관점을 대조하여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법 제131-1조)을 수행한다. 사법조정과 달리 법원의 의뢰에 의한 민간조정인은 어떠한 결정권도 없으며,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권한도 인정되지 않는다.⁶⁷⁾

(2)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야와 소송단계

법원은 모든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조정을 지명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민간조정인의 회부는 가치분절차에서도 가능하다(1995. 2. 8.자 법률 제22조). 사법상의 모든 분쟁이 원칙적으로 조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사법조정이나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조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의 조정은 불가능하다.

조정인 지명 및 조정 회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법 제131-1조, 1995. 2. 8.자 법률 제22조). 다만, 법원은 가치분절차를 포함한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화해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법원이 지정한 민간조정인을 만날 것을 명할 수 있다. 민간조정인은 민간조정 조치의 목적과 절차 진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설명한다(1995. 2. 8.자 법률 제22-2조).⁶⁸⁾

(3) 조정인 지명과 조정인 자격

법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정인으로 지명할 수 있다.⁶⁹⁾ 민사소송법전은 조정인의 자격 사유를 규정하는 외에는 능력이나 경력 요건에 관하여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다. 조정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명에 따라 조정임무를 수행하는 자연인은 2급 전과기록상의 형사처벌이나 능력 또는 자격 박탈의 전력이 없고, 명예, 징역,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파면, 제명, 해임, 임명이나 허가의 취소 등 징계 또는 행정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나 현재의 활동에 비추어 분쟁의 성질에 비추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정인은 조정 활동에 필요한 독립성을 보증하여야 한다(법 제131-5조).

한편, 2016년 11월 법률 개정⁷⁰⁾ 및 2017년 명

령 제정⁷¹⁾으로 항소법원별로 민사, 상사, 사회, 가사 분야 민간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민간조정인 명부는 명부에 등재되고 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신청을 받고 지방검사장의 의견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항소법원 관내 법관총회가 작성한다. 명부는 3년마다 전면 재작성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위 명령 제1조). 이렇게 보면 민간조정인 명부와 사법조정인 명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조정인의 경우와 달리 민간조정인이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명부는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일 뿐, 법원이 이 명부에 기재된 민간조정인에게만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⁷²⁾

(4) 조정인에 대한 보수 지급

조정인에게는 보수가 지급된다.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조정인 지명 결정시에 예상되는 조정인 보수에 가까운 금액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공탁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31-6조), 실제로는 당사자가 예납금을 조정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한다.⁷³⁾ 기한 내 공탁(또는 예납금 지급)이 없으면 조정인 지명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가 속행된다(법 제131-6조). 법원은 조정임무가 종결된 때 조정인의 보수를 확정한다(법 제131-13조). 당사자 사이의 보수 부담 방식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⁷⁴⁾ 보수액을

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5) 절차의 진행과 종결

법원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 기간을 정하여 조정에 회부한다. 위 기간은 조정인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법 제131-3조). 위와 같이 입법자가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최장 6개월이 조정시도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함과 동시에, 조정에 실패했을 때 당사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⁷⁵⁾ 조정인은 판사와 같이 사건을 심리할 권한은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법 제131-8조). 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한 확인이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사건에서도 제출되거나 인용될 수 없다(법 제131-14조). 다만 합의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이익 또는 사람의 신체나 정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된다(1995. 2. 8.자 법률 제21-3조).

민사소송법전이나 1995. 2. 8.자 법률은 합의의 형식이나 합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 조정인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만 중개하고 합의의 내용은 당사자가 스스로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조정인은 합의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⁷⁶⁾ 계약에 의한 민간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조정합의문을 작성하여 서

67)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40.

68) 위 조항은 사법부 개선에 관한 2019. 3. 23.자 법률 제2019-222호 제3조로 개정된 것인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조정인에 대한 조정의뢰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데 대한 비판의견도 있다고 한다.

Editions Francis Lefebvre - La Quotidienne, « La Loi de réforme de la justice étend le champ des modes alternatifs de règlement des différends », 12 avril 2019. [https://www.eff.fr/actualites/affaires/contentieux/details.html?ref=UI-b3018e0d-9fd8-426c-b1fc-c7670226d76f\(2020. 8. 16. 최종방문\).](https://www.eff.fr/actualites/affaires/contentieux/details.html?ref=UI-b3018e0d-9fd8-426c-b1fc-c7670226d76f(2020. 8. 16. 최종방문).)

69) 조정인은 법원의 조정인 지명 결정을 고지받는 즉시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법 제131-7조).

70) 21세기 사법부 현대화에 관한 2016. 11. 18.자 법률 제2016-1547호(Loi n° 2016-1547 du 18 novembre 2016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 제8조로 1995. 2. 8.자 법률에 신설된 제22-1A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71) Décret n° 2017-1457 du 9 octobre 2017 relatif à la liste des médiateurs auprès de la cour d'appel.

72)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44.

73)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66.

74) 1995. 2. 8.자 법률 제22-2조.

75)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40.

76)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p. 179~180.

명하고, 변호사가 부서할 수도 있다(민법 제1374조). 조정기간이 만료하면, 조정인은 법원에 서면으로 조정 성립 여부를 보고한다(법 제131-11조). 조정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 전에 법원이 조정을 종료하려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열어 당사자를 소환한다(법 제131-10조 제3항). 법원은 변론에서 조정절차를 종결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승인하여 집행력을 부여한다.⁷⁷⁾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합의조서(le constat d'accord)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1-12조). 당사자가 합의의 비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⁷⁸⁾

III. 조정인의 양성과 조정인 단체

1. 조정인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감독 방법

가. 조정인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

사법조정 또는 민간조정에 관한 법령에서는 결격사유 이외에 조정인에게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법조정인에게는 “법을 분야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1978. 3. 20.자 명령 제2조 제2항), 민간조정인에게는 “현재의 활동이나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 분쟁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실무에 적합한 교육이나 경험이 있음이 인정되어야”한다는(법 제131-4조, 제1533조)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나. 사법조정인의 관리·감독

사법조정인은 사법부가 임명하고 감독하며, 그 임명과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사법조정인은 위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외에 매 임명시마다 사법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항소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위 명령 제3-1조).⁷⁹⁾ 또한 사법조정인은 매년 항소법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위 명령 제9조). 사법조정인은 최초임명 시에 “나는 나의 직을 정확하고, 바르고(la probité),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 직무가 나에게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위 명령 제8조). 항소법원장은 갱신 거부나 면직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법조정인의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위 명령 제2조). 즉, 사법조정인에 대하여는 그 질적 수준을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민간조정인의 관리·감독

민간조정인은 사법조정인과 경우가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조정인에 대하여도 2018년부터 항소법원별로 조정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부는 기본적으로 소송계속 중에 민간조정인을 지명하여 조정을 의뢰하는 법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원이 위 명부에 등재된 민간조정인만을 민간조정인으로 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합의에 의한 민간조정)을 시도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2008년 유럽연합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사원은 국가 차원의 조정인 인증제도를 채택하는 방안에 반대하였다. 국가에 의한 조정인 자격 인증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위 지침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⁸⁰⁾ 국사원은 조정인 신고제를 통해 조정인 현황을 확인하고 명부를 제공하는 방안⁸¹⁾도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결론적으로는 조정인들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가 조정인에 대한 교육과 윤리 강령을 제공하고, 소속 조정인들을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는 소수의 조정인단체와 단체연합을 인증하고 해당 단체들에게 조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감독권을 넘기는 것이 절차의 탄력성과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민간조정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가장 유연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이미 조정인단체들이 소속 조정인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소속 조정인들에게 윤리 규약에 서명하도록 하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인이 되었다.⁸²⁾

프랑스는 국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별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조정인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⁸³⁾ 다만, 소비자분쟁의 재판외적 해결에 관한 2013. 5. 21.자 유럽연합 지침 제2013/11호가 국내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분쟁 분야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소비자분쟁 조정 평가 및 감독 위원회)이 설립되어 위 분야 민간조정인을 인증하고 관리하게 되었다.⁸⁴⁾⁸⁵⁾ 그러나 조정인의 양성과 감독을 조정인단체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⁸⁶⁾ 2019년도 조정인에 대한 자격증 부여 요건 규제와 법적 의무로서의 교육의무 부여 등을 주장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⁸⁷⁾ 프랑스에도 국가 차원의 조정인 인증제도가 도입되거나 법령에 따른 통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조정인단체의 조정인 양성과 감독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부터 다수의 조정인단체들이 활동해 왔으며,⁸⁸⁾ 현재에도 전문

80) 국사원은 그밖에 민간기구에 인증을 맡기는 방안은 인증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사이의 분쟁 조정에만 인증제도를 두는 방안은 조정제도의 이원화를 유발하는 것이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81) 신고하지 않은 조정인도 조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지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보장은 신고한 조정인이 진행한 조정합의에만 인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82) 이상의 내용은, Conseil d'État,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Étude adopté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d'État le 20 juillet 2010, pp. 62~65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83) 조정인단체에 대한 인증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4)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 L.615-1조 이하 및 R.615-1조 이하.

85) 그 밖에 개별 분야별 조정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86)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36(일종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정인 교육 및 조정인단체에 대한 인증, 조정인명부 작성, 조정인 윤리 강령 작성 등의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위 주장은 파리 항소법원 사법조정인 및 민간조정인 조정 담당 재판관이던 Fabrice Vert의 보고서 내용이 2012. 5. 31. 신문에 소개된 것인데, 원문을 찾기는 못하였다); 같은 사람이 제기한 국가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Fabrice Vert, « Première listes de médiateurs dans les cours d'appel : un dispositif légal perfectible », Dalloz actualité 29 octobre 2018; 공법 분야에서 조정인 인증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로 Sophie Monnier, « Le médiateur,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 RFDPA 2015, p. 1175.

87) Valérie Lasserre, « Les graves lacunes de la réforme de la justice en matière de médiation », Recueil Dalloz 2019, p. 441(nos 18, 19, et 23).

88) 이미 2000년에 7개 조정인 단체가 모여 “조정인을 위한 선언”을 한 바 있다. [https://www.anm-mediation.com/page-categorie.php?categorie=1\(2020. 8. 16. 최종방문\).](https://www.anm-mediation.com/page-categorie.php?categorie=1(2020. 8. 16. 최종방문).)

77)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77.

78)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178.

79) 교육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교육기간 동안의 체류비와 이동경비는 사법조정인의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라 사법조정인에게 지급된다.

분야별 조정단체를 포함하여 수십여 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정인단체는 그 법적 성격이 직능조합, 단체, 조정단체의 연합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정 수준의 교육과 윤리 규약 준수 등을 가입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삼는 등으로 조정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조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프랑스 민간 조정의 현황을 조금이나마 엿보기 위해 4개의 주요 단체 또는 기관을 소개하기로 한다.⁸⁹⁾

가. 조정·협상전문가조합(CPMN)⁹⁰⁾

조정·협상전문가조합(Chambre professionnelle de la médiation et de la négociation)은 2001년 설립된 민간조정인 동업조합으로 전문조정인의 이익 보장 등 동업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조정 발전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업조정인으로 활동하는 자연인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조합은 보르도에 프랑스 최초의 직업조정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⁹¹⁾ 조정인 네트워크인 ViaMédiation을 운영하고 있다.⁹²⁾

나. 전국조정인협회(ANM)⁹³⁾

전국조정인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médiateurs)는 민간조정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간조정인 교육과 조정제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총 884명(71개 조직 포함)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협회는 민간조정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민간조정인 검색

창도 제공하고 있는데, 위 명부에 등재되려면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매년 20시간의 추가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협회는 지역별로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

다. 전국조정센터연합(FNCM)⁹⁴⁾

전국조정센터연합(Fédération nationale des centres de médiation)은 2001년 설립된 조정단체의 연합체로 현재는 59개 단체(센터)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조정센터연합은 조정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정센터를 인증하며, 인증받은 조정센터가 구성원인 조정인을 인증한다. 인증조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연합도 교육기관이나 조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조정인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라. 전국변호사조정센터(CNMA)⁹⁵⁾

전국변호사조정센터(Centre national de médiation des avocats)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서 만든 연구센터로 변호사인 조정인과 조정절차에서 자문으로 활동할 변호사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이 조정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변호사

89) 이하, 각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90) <https://www.cpmn.fr>(2020. 8. 16. 최종방문)

91) Ecole professionnelle de la Médiation et de la Négociation(<https://www.epmn.fr>, 2020. 8. 16. 최종방문). 위 교육기관이 프랑스에서 ISO9001 인증을 받은 유일한 조정인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으로, Rene Canfin et al., *Code de la médiation et du médiateur professionnel*, 2^e éd., Médiateurs éditeurs, 2013, p. 369.

92) <https://www.viamediation.fr>(2020. 8. 16. 최종방문)

93) <http://www.anm-mediation.com>(2020. 8. 16. 최종방문).

94) <https://www.ffcmmediation.org>(2020. 8. 16. 최종방문).

95) <https://cnma.avocat.fr>(2020. 8. 16. 최종방문).

조정인 사이의 활발한 소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 센터는 변호사인 조정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인 또는 당사자의 자문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변호사조정인 또는 조정절차에서 자문할 변호사를 검색하고 선임할 수 있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다. 위 센터가 제공하는 조정인명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200시간의 교육 또는 140시간의 조정실무 교육과 60시간에 준하는 조정인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조정인 윤리 규약

프랑스에서는 각 조정인단체가 독자적으로 조정인 윤리 규약을 제정하여 그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9. 2. 5. 7개 조정인단체가 모여 제정한 ‘조정인 윤리 규약(Code de déontologie du médiateur)⁹⁶⁾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⁹⁷⁾ 위 규약은 민간조정 개념을 정의한 전문과 조정인의 의무를 정한 본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본문은 조정인의 질적 수준 보장, 조정절차와 방법 보장, 그리고 조정인의 책임과 제재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조정인의 질적 수준 보장

규약은 조정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와 제3자로서 조정절차에서 지켜야 할 자세를 비교

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조정인 교육

조정인은, 특히 각 단체의 규범과 기준에 따라, 조정에 특유한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자격을 얻어야 한다. 또한, 조정인은 사례분석 회의(les séances d'analyse de la pratique)에 참여하는 외에, (심포지엄, 토론회, 연수회 등) 정기 교육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 지식을 세련하게 하고 다듬어야 한다.

(2) 조정인의 자세

조정인은 제3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독립성: 조정인은 조정 내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조정인은 조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여야 한다.

② 중립성: 조정인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인술자의 역할을 하지만, 조정인 자신의 의견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 조정인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단체로 시행하는 실무분석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실무분석 회의에 감수를 받을 것이 권유된다.

③ 공정성: 조정인은 조정에서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들거나 일방을 우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조정인은 사적, 직업적, 경제적 관계가 있거나 자문 관계에 있거나 기타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조정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조정인이

96) AN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anm-mediation.com/categorie.php?id=VkVjMmxEbZBEcm9GZm9BZVZzK3dXVXVXNkE5OHpVYncv eHZnR1JvalMzaz0=&menu=2>

97) 조정·협상전문가조합이 2006. 6. 24. 채택한 조정인 윤리 규약의 내용은 위 조합의 홈페이지와 Rene Canfin et al., *préc.*, pp. 381~396 참조.

조정사건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조정인은 자신의 팀원이 조정에 관계되는 누군가를 위하여 조정인 이외의 자격으로 행위하였거나 행위하는 경우 조정 임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④ 충실성: 조정인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윤리에 반하여 금지된다. 조정인은 중재자가 될 수도 없다. 조정인은 당사자의 요구가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당사자를 조정의 범위 안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나. 조정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칙

(1) 조정절차

① 조정합의(le consentement)⁹⁸⁾: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의가 자유롭고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조정 임무 수행을 거부한다. 조정인은 조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과 조정절차 방식 전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조정인은 제공한 정보를 당사자가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정인은 당사자가 이유제시 없이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으며, 조정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인 스스로도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② 비밀유지: 조정인은 누구에게도 조정 회의의 내용이나 조정절차에서 얻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 조정인에게 법적 의무가 있거나 공공질서 위반이 있는 경우는 그

렇지 않다. 조정인은 특히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자료를 인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원의 의뢰에 의한 조정에서는 분쟁에 대한 합의 여부를 알릴 수 있다.

(2) 조정방법

① 정보제공: 조정인은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조정방법 전체를 명확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정인은 특히 참가자에게 조정인 자신이 따르기로 서명한 이윤리규약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② 조정합의: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조정인은 당사자가 내용을 알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하여야 한다. 조정협약이 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조정협약(la convention de médiation): 조정협약은 문서로서 한다. 이 협약은 조정을 조직하는 요소들로서 절차진행, 회담의 기간, 조정장소, 조정비용,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자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협약에는 조정에서 드러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맹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위 정보는 진행 중이거나 추후에 진행될 소송절차에서 이용될 수 없다.

이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조정인이 이 규약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였음을 확인한다.

③ 조정의 진행: 조정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진행된다.

④ 조정의 종결: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종결되며, 합의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합의문서(un protocole)는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합의의 내용을 옮겨 적은 사본이다. 문서에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서명한다. 문서로

된 합의는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소유이며, 이들은 법원에 합의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과 제재

(1) 조정인의 책임

① 조정인은 결과채무(l'obligation de résultat)가 없다.

② 조정인은 조정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책임진다.

③ 조정인은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합의의 실현가능성이나 형평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합의가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조정인은 합의에 앞서 권한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권고한다.

④ 조정인은 사람(들)이 절차진행에 필수적인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들이 개별적 회담에서 그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⑤ 조정인은 2급 전과기록에 기재된 형사처벌 또는 능력이나 자격박탈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2) 제재

이 규약에 서명한 조정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조정인은 그가 구성원으로 있는 조정센터나 조정단체의 조정인명부에서 삭제될 수 있다.

IV. 우리 법에의 시사점

1. 법령 정비

가. 변호사법과의 관계

프랑스에서도 사법부 및 법률 전문직을 개선하는 1971. 12. 31.자 법률 제71-1130호에서 우리 변호사법 제109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 제54조에 따르면,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는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하거나 사서증서(l'acte sous seing privé)를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제54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제66-2조, 제72조). 다만, 직업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인증받은 공공기구나 사적직능조직이 인증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그 자격의 범위 내에서, 그 주된 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법률자문을 할 수 있고 그 활동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사서증서의 작성을 할 수 있다(제60조). 민사소송법전에서 민간조정인에 대한 규정을 둔 이상 민간조정인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⁹⁹⁾ 민간조정인이 위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을 하거나 사서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 같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조정인이 법률자문이나 사서증서 작성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조정인의 역할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로서 당사자를 안내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며, 당사자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는다. 자문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안내할 뿐이다. 또한

98) 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99) Natalie Fricero et al., préc. p. 222.

민간조정인은 사법조정인과 달리 합의조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지 않는다.¹⁰⁰⁾

프랑스와 달리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활동을 당사자에 대한 일종의 법률자문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방식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사조정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민간조정인에게 허용되는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민간조정 촉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의 정비

프랑스에서는 그밖에도 민간조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문에 집행력이 부여되는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밖에 2008년 민법전 개정으로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즉,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날(문서로 합의한 경우) 또는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최초 기일에 소멸시효가 정지되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민간조정인이나 사법조정인이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면 남은 기간¹⁰¹⁾이 다시 진행된다(민법전 제2238조). 즉, 우리 민사조정법에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같은 법 제35조).

프랑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정제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5,000유로 이하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 일부 사건에 대하여는 민간조정이나 사법조정 등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법원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민간조정을 권유할 권한이 있음을 민사소송법전에 명시하였다. 소멸시효 중단이나 조정절차에서의 합의에 집행력 등을 인정하는 것은 민간조정인과 민간조정인의 질적 수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인정된다면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조정전치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정인이 늘어나는 조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조정인 양성과 인증

프랑스에서도 조정인의 교육과 인증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인증제도를 수립하거나 교육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될 계획은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프랑스에서 이전부터 민간조정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 등의 문제로 민간조정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인의 교육과 감독의 기본 틀을 법령으로 정하여 민간조정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둘 것인지, 인증받은 조정인에 한하여 민간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이상으로 법령 정비의 측면과 조정인 양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프랑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았으나,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민간조정 활성화는 시위 등 집단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 아닌 상호간의 상생과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원만한 분쟁해결 방식을 우선시하는 문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개선이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민간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약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2.
- 김용섭,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57호, 2016.
- 김용섭,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의(편), 외국의 조정제도, 2017.
- 원용수, “프랑스의 ADR과 그 활용 현황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17권 제1호, 2007.
- 이경민, “프랑스의 조정제도”, 재판자료 66집 외국사법연수논집 [12], 1994.
- 이토리, “프랑스의 ADR제도 - 법원관련 중재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9권, 2009.
- 전훈, “프랑스 콩세이테파(Conseil d'Etat)의 기능과 역할” 『중암법학』 제12집 제3호, 2010.
- 박노형,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법률신문 2020. 3. 26.자.

[프랑스 문헌]

- Conseil d'État,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Étude adoptée par l'Assemblée générale du Conseil d'État le 20 juillet 2010.
- Rene Canfin et al., *Code de la médiation et du médiateur professionnel*, 2^e éd., Médiateurs éditeurs, 2013.
- Natalie Fricero et al., *Le guide des modes amiables de résolution des différends (MARD)*, 3^e éd., Dalloz, 2017.
- Yves Gaudemet, *Droit administratif*, 22^e éd., LGDJ, 2018.
- Serge Guinchard et al.,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la version numérique., Dalloz, 2016.
- Conseil d'État, « Développer la médiation dans le cadre de l'Union européenne », Dossier de presse, 29 novembre 2010.
- Ministère de la justice, « Les chiffres-clés de la Justice 2019 ».
- Christophe M Courtau, « Conciliateur de justice : promouvoir le conciliateur et la conciliation, piliers d'une justice de proximité citoyenne », art. site internet village-justice.com, parution mars 2014.
- Valérie Lasserre, « Les graves lacunes de la réforme de la justice en matière de médiation », Recueil Dalloz 2019.
- Sophie Monnier, « Le médiateur, nouvelle figure du droit public », RFDA 2015, p.1175.
- Fabrice Vert, « Première listes de médiateurs dans les cours d'appel : un dispositif légal perfectible, Dalloz actualité 29 octobre 2018.

100) 독일의 경우 조정인이 법적이 규율을 제안하지 않는 한 조정을 법률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개로 김용섭, “조정 활성화를 위한 조정인의 교육과 역량”, 8면 참조.

101)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된다.

주제어 : 민간형 조정, 민간조정, 프랑스 조정제도,
조정 활성화, 조정인 인증

Keywords : mediation, conciliation, mediation
in France, activating mediation
system, mediator certification